

# 보건복지 ISSUE & FOCUS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 318호 (2016-18)  
발행일 2016. 06. 27.  
ISSN 2092-7117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TEL 044)287-8000 FAX 044)287-8052

## 해외 공·사적 연금 혼합의 현황과 시사점<sup>1)</sup>



우해봉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재정 안정화 개혁으로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사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충실히 보완할 것인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
- 특히, 비스마르크형(Bismarckian) 소득보장체계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수준이 축소되는 동시에 사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함으로 인해 적정 노후 소득보장과 관련된 우려가 적지 않음.
- 사적연금의 급여 체계 또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뚜렷이 관측됨으로써, 노후 준비 리스크의 배분과 관련하여 사적연금의 지배구조(governance)가 갖는 함의가 커지고 있음.

### 1. 공·사적 연금 혼합(public-private pension mix)의 등장 배경

#### ■ 인구 고령화와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 20세기 후반 이후 가파르게 진행된 인구 고령화 현상은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등장함.
-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산식 및 급여의 연동방식(indexation) 변경, 급여와 기대여명 간 연계, 은퇴 연기 유인 강화 등 다양한 공적연금 개혁 조치들이 추진됨.
-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에 따라 사적연금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 속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분담, 이른바 공·사적 연금 혼합에 대한 논의가 증가함.

1) 본 원고는 우해봉 외(2015), 「공·사적 연금 체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발전 방향」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와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

-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와 사적연금 강화가 연금 개혁 패키지로 명시적으로 고려되기도 하지만,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에 따른 추가적인 소득원 확보 차원에서 정책적 개입 없이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되기도 함.
- 우리나라 또한 1998년과 2007년의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급여 적정성과 관련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에 따른 급여 적정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고, 2014년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됨.
  - 사적연금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2005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어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14년에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바 있음.<sup>2)</sup>

### ■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사적연금의 가능성과 한계

- 사적연금 강화는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적연금 강화 전략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동시에 노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함.
- 본 원고에서는 공·사적 연금 혼합에 관한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공·사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내실화와 관련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2. 해외 공·사적 연금 혼합의 현황: 덴마크, 독일, 영국, 이탈리아

### ■ 분석 대상 국가

- 본 원고에서는 덴마크,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사례를 살펴보는데, 이들 국가 중 덴마크와 영국은 연금제도의 분류 체계상 베버리지형(Beveridgean) 기초연금을, 독일과 이탈리아는 비스마르크형(Bismarckian) 소득비례연금을 도입·운영한 국가임.
- 베버리지형 기초연금과 비스마르크형 소득비례연금을 도입·운영한 국가들은 매우 이질적인 사적연금 발전 과정을 보였음.
  - 비스마르크형 소득보장체계에서는 공적연금의 기본 목표가 은퇴 이전의 생활수준 보장(consumption smoothing)이라는 점에서 사적연금은 잔여적 역할만을 담당할 개연성이 높음(공적연금에 의한 사적연금 구축).
  - 반면 베버리지형 소득보장체계에서는 공적연금이 빈곤 방지(poverty prevention)와 같은 기초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급여 적정성 확보 차원에서 중·상위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사적연금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물론,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비스마르크형 및 베버리지형 국가군 내부에서도 개별 국가가 직면한 정치 사회적 환경 차이로 인해 그 내부적 이질성 또한 작지 않음.

2) 관계부처 합동, (2014).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보도자료.

■ 국가별 공·사적 연금제도의 운영 현황

- 덴마크는 기초연금과 함께 적립방식의 ATP(노동시장보충연금; Supplementary Labor Market Pension)가 도입·운영되었지만, ATP의 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함으로 인해 사적연금이 발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았음.
  - 그러나 정치적 균열로 인해 제2층 연금제도가 도입되지 못하다가, 1990년대 초 노사정 합의에 기초한 노동 시장연금(Labor Market Pensions)이 도입됨으로써 비로소 활성화되기 시작함.
- 독일의 경우 공적연금과 자발적 퇴직연금이 공존한 역사가 길지만(특히, 대기업), 공적연금이 사적연금을 효과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퇴직연금은 잔여적 역할만을 담당했음.
  - 그러나 2000년대 초에 이루어진 공적연금(GRV)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축소와 사적연금 강화 전략을 통해 공·사적 연금 혼합 체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남.
  - 특히, 2001년 개혁을 통해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퇴직연금으로 전환(earnings conversion)할 권리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한편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Riester 연금을 도입하여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자 함.
- 네덜란드, 스위스와 함께 다층소득보장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의 경우 제2층 공적연금(SERPS/S2P)을 퇴직연금(1978년 이후)과 개인연금(1986년 이후)으로 적용대체(contracting-out)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사적연금의 역할이 크게 강화됨.<sup>3)</sup>
- 이탈리아는 1995년의 NDC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적 연금을 통한 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짐.
  - 그러나 높은 보험료율(1992년 26% → 1995년 33%)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적립방식 사적연금의 재원을 새롭게 조달해야 하는 이중적인 문제에 직면함.
  - 적립방식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여력이 부족했던 이탈리아의 경우 기존 퇴직금(Tfr)을 퇴직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함.
- <표 1>에서 나타나듯이 덴마크와 영국의 경우 전체 공·사적 연금 지출에서 사적연금의 비중이 대략 35% 이상으로 노후소득보장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이 상당히 큰 상황임.
  - 반면 비스마르크형 소득보장체계에 기초한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전체 공·사적 연금 지출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이 절대적임.

<표 1> 국가별 공·사적 연금 체계 및 연금 지출 현황

국가	공·사적 연금 체계					공·사적 연금 지출 규모 (GDP 대비 %, 2012년)		
	공적연금		사적연금			전체 (A)	사적연금 (B)	B/A × 100
	국가(1주)		기업(2주)		개인(3주)			
	1층 (기초보장)	2층 (소득비례)	2층 (단체협약)	2층 (고용계약)	3층 (개인)			
덴마크	BP + ATP		DC(준의무)	-	-	11.2	5.1	(45.4)
독일	SA	Point	DB/DC(임의)	DB/DC (임의; 대기업)	DC(임의; Riester)	11.4	0.2	(1.8)
영국	BP + SA	DB(적용대체)	-	DB/DC	DC	9.4	3.2	(34.2)
이탈리아	SA	NDC	DB/DC(임의)	(Tfr)	-	15.8	0.3	(1.8)

주: BP=기초연금, SA=범주형 공공부조; 주(pillar)는 연금을 지급하는 주체, 층(tier)은 제공되는 연금 급여의 기능을 지칭함.

자료: 우해봉 외(2015, p.20, p.25, 수정 인용)

3) 참고로, 영국의 경우 2016년 4월 5일 이후 국가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개인(1951년(남성)/1953년(여성) 4월 5일 및 그 이후 출생자)에게는 기존의 1층(BSP)과 2층(S2P) 공적연금 대신 단층의 기초연금(State Pension)이 새롭게 적용되며, 제2층 공적연금의 폐지로 적용대체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대신 2008년 연금법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NEST; 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편적인 제2층 연금제도로 기능하게 할 계획임.

### 3. 사적연금의 지배구조

#### ■ 사적연금의 지배구조(governance) 분류

- 개별 국가가 운영하는 사적연금의 특징과 파급효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적연금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유용함.
  - 이는 공적연금과 비교해 사적연금의 운영 과정에는 국가 외에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하고 상호작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 사적연금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본 원고에서는 Ebbinghaus & Wiß(2011)의 분류 방식을 따라 1) 노사와 같은 사회적 파트너 간의 협의(단체협약), 2)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 고용관계, 3)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기로 함.<sup>4)</sup>

#### ■ 국가별 사적연금 지배구조의 특징

- 노사 등 집합적 관계에 기초한 지배구조는 적용 범위의 포괄성 및 이로 인한 리스크의 효과적인 분산, 연금 가입 이력의 이동성(portability) 보장, 행정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지배구조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됨.
  - 덴마크 퇴직연금의 지배구조가 이러한 형태에 해당하며,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비스마르크형 국가에서도 노사 간 협의에 기초한 퇴직연금 운영은 1990년대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근로자와 사용자 간 개별 고용관계에 기초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등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의 운영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구조임.
  - 영국의 퇴직연금 지배구조가 대체로 개별 고용관계에 기초한 방식인데, 영국은 다층보장의 역사가 네덜란드나 스위스처럼 오래된 국가이지만, 분권화된 노사관계와 사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개입 수준이 낮은 관계로 전국(부문) 단위의 퇴직연금 체계를 발전시키지 못함.
  - 독일의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별 고용관계에 기초한 퇴직연금이 부가급여로 지급되기도 함.
- 마지막으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기초한 방식의 경우 국가가 규제자로서 기본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귀속됨.<sup>5)</sup>
  - 제2층 공적연금(S2P)에 대한 가입 대신 개인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영국의 사례가 대표적임.
  - 영국과 달리 독일의 Riester 연금은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국가에 의한 체계적인 개입이 이루어진 특징이 있음.

4) Ebbinghaus, B., Wiß, T. (2011). The governance and regulation of private pension in Europe, in Ebbinghaus, B. (ed.). The Varieties of Pension Governance: Pension Privatization in Europ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351-383.

5) 개인연금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와 달리 강제방식 또한 가능한데, 스웨덴의 개인연금(Premium Pension)이나 2010년 종료된 덴마크의 개인연금(Special Savings Pension)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함.

## 4. 사적연금의 적용 범위 및 보험료

### ■ 사적연금의 적용 범위

-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된 상황에서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충실히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에 상응하는 적용 범위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
- 노사와 같은 사회적 파트너 간의 단체협약에 기초한 사적연금의 경우 그 적용 범위가 대체로 사적연금이 강제되는 국가(예컨대, 스위스)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데 덴마크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함.
  - 덴마크는 노조의 영향으로 퇴직연금의 적용 범위가 준보편적인 수준으로 확대된 사례인데, 1991년 이후 민간 부문 근로자 80% 이상의 단체협약에 퇴직연금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됨.
- 영국의 경우 공적연금(SERPS/S2P)에 대한 적용대체(contracting-out)를 허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적연금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 사례에 해당함.
  - 그러나 제2층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연계하여 적용 범위의 보편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퇴직연금 적용의 보편성이 확보되는 덴마크와는 구분됨.
- 독일의 경우 공공 부문 피용자 퇴직연금(VBL)은 1969년 이후 법적으로 강제되었으며, 민간 부문 또한 2001년 개혁을 통해 2002년부터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의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전환(earnings conversion)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퇴직연금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됨.
  - 소득(상한 적용)의 4%까지 퇴직연금 전환이 허용되었는데, 개인연금인 Riester 연금이 최대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율을 2002년 1%에서 2008년 4%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된 것과 달리 소득전환(퇴직연금)은 최초 시작된 2002년부터 4%로 설정됨.
  - 또한 Riester 연금의 경우 2008년 이후 보조금 상한이 고정된 반면 퇴직연금(소득전환)에서는 소득 상한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사적연금에서 Riester 연금에 비해 퇴직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 평가됨.
  - 퇴직연금의 적용 범위에서 볼 때 독일은 다층체계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에 근접한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됨.
-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경우 1982년부터 법제화된 퇴직금제도(Tfr)를 퇴직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퇴직연금의 적용 범위는 분석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상황임.
  - 특히, 퇴직금제도(Tfr)의 존재 여부 그리고 이러한 퇴직금이 퇴직연금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가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률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 사적연금의 보험료

- 기여와 급여가 밀접히 연계된 사적연금에서 보험료 수준은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
- 사적연금 활성화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덴마크의 퇴직연금 보험료는 단체협약에 따라 12~18%로 설정되는데 (대체로 사용자 2/3, 피용자 1/3 부담), 다층보장의 역사가 오래된 스위스(7~18%), 네덜란드(15%), 영국에 비해서도 낮지 않은 수준임.
- 영국의 퇴직연금 보험료율은 급여 체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평균적으로 DB형은 20~21%, DC형은 9% 수준임.

- DC형의 보험료율이 대체로 제도 설계 시점에서 결정되는 것에 비해 DB형의 보험료율은 연금부채 총당 관계로 일반적으로 연 단위로 설정됨.
- 연금부채 증가로 2000년대 들어 DB형 퇴직연금 보험료율이 크게 인상되었으며,<sup>6)</sup> 이에 따라 사용자들이 퇴직 연금의 급여 체계를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임.
- 그러나 DC형 전환으로 금융시장 리스크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한편 급여 수준 또한 크게 축소됨으로써, 적정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현재의 DC형 퇴직연금(보험료율)이 충분한가와 관련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표 2〉 국가별 사적연금의 적용 범위(민간 부문 피용자 대비 %) 및 보험료**

국가	적용 범위		보험료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덴마크	95%		12%~18%	
독일	~50%	44%	4% (세전소득(상한 적용) 기준 최대 소득전환율)	4% (Riester 국가 보조금 최대 수급을 위한 최소 보험료)
영국	52.3%	19%	DB(20.5%) (사용자 15.6%; 피용자 4.9%)	
			DC(9.1%) (사용자 6.5%; 피용자 2.7%)	
이탈리아	26%(32%)		5~10%	

주: 2000년대 이후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 기준; 이탈리아의 괄호 안 수치는 1993년 개혁 전부터 존재한 퇴직연금(PEF)을 포함한 수치  
 자료: 우해봉 외(2015, p.38, p.48, 수정 인용)

- 독일의 경우 소득전환(earnings conversion)에 기초한 퇴직연금이란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Riester 연금이 든 제도가 목표로 하는 보험료율은 4%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덴마크나 영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sup>7)</sup>
  - 전통적으로 장기근속 유인 차원에서 지급된 퇴직연금(Direktzusage, Unterstützungskasse)의 재원은 사용자가 부담하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 활성화된 퇴직연금(Direktversicherung, Pensionskasse, Pensionsfonds)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기여에 기초하여 재원을 마련함(다만, Pensionskasse와 Pensionsfonds에서는 노사 공동 부담 경향).
  - 또한 전통적인 퇴직연금에서는 DB형이 일반적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DC형으로의 전환 추세가 나타남.
  - 전반적으로, 독일의 경우 사적연금의 적용 범위 확대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가능하지만, 적정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임.
- 이탈리아의 퇴직연금 보험료율은 5~10% 수준인데, 사용자와 피용자의 보험료 외에 퇴직금(Tfr) 전환분이 재원 조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예컨대, 이탈리아 퇴직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CPF(Closed Pension Funds)의 보험료율은 9.29%인데(1993년 이후 가입 근로자), 이 중에서 퇴직금(Tfr) 재원의 비중이 대략 3/4을 차지함(6.91%).

6) 이러한 DB형 퇴직연금의 보험료율은 제2층 공적연금(S2P)에 대한 적용제외로 인해 받게 되는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감면액(contract-out rebate)에 비해 훨씬 높음으로 인해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적용제외를 추진할 유인이 떨어지는 상황임.

7) 일정한 조건하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개인이 소득전환과 함께 Riester 보조금을 수급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짐.

- 비록 기존 근로자의 퇴직연금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1993년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낮은 수준이 아니며 향후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공적연금이 NDC 방식으로 전환된 동시에 사적연금의 사각지대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탈리아 다층소득보장체계의 미래는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임.

## 5. 결론 및 시사점

-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축소로 사적연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와 관련된 성과는 국가에 따라 상당히 큰 편차를 보임.
  - 특히,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전통적으로 비스마르크형 소득비례연금을 도입·운영한 국가들의 경우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크게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를 충실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물론 베버리지형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영국의 경우에도 1~2층 공적연금의 빈곤 방지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동시에 DB형 중심 퇴직연금이 점차 DC형으로 전환됨으로써 개인들이 금융시장 리스크를 부담하는 동시에 현재의 퇴직연금(DC) 보험료율을 통해 근로자의 적정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과거와 달리 1990년대 이후 사적연금의 급여 체계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뚜렷하게 관측되는데, 이에 따라 노후 준비 리스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적연금 분야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함.
  - DC형 사적연금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등 제도 운영의 세부적인 설계 방식에 따라 개인들이 실제 부담하는 리스크는 상이할 수 있기에 사적연금의 지배구조는 노후소득보장 리스크 배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특히, 국가가 수많은 사적연금 운영 기관을 세부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적연금의 지배구조는 국가의 관리/감독 기능을 보완하여 가입자와 퇴직연금 운영 기관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
  - 본 원고에서 살펴본 국가 중 영국은 최근 들어 DC형 급여 체계로 전환되어 급여 수준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동시에 퇴직연금의 지배구조 또한 개별 고용관계를 강조하는 관계로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노후 준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14년 8월에 국민연금의 역할 축소를 보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바 있음.
  - 정부 대책에는 자산 운용의 합리성 및 탄력성 제고,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및 연금화 강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2022년까지 전체 사업장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

-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를 충실히 보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이 적용 범위 확대라는 점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이번 조치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배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
  - 그러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남아 있음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정부의 계획대로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가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는 하지만,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 분담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단기적으로 퇴직연금 수급권은 물론 국민연금 수급권조차 없는 개인들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에서 충실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관심이 필요함.
- 정부의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 및 근로자의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됨.
  - 그러나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사적연금(퇴직연금) 활성화는 정부 주도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특징을 보임.
  - 제도 도입 후 이미 사반세기가 경과한 국민연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보여줌.
  - 향후 사적연금의 운영 과정에서 가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가입자의 입장에서도 사적연금의 운영 과정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함.

집필자 우해봉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문의 044-287-827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